개정 보험업법의 주요 내용

백영화 연구위원

2020년 11월 19일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12월 8일 공포되었음. 개정 보험업법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 완화,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부담 완화,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간소화,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 의무화,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개정 보험업법이 2020년 12월 8일 공포되었음

- 2020년 11월 19일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은 유동수 의원안(2020년 6월 10일 발의, 의안번호 2100330호)과 정부안(2020년 6월 29일 발의, 의안번호 2101138호)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것임
- 이후 개정 보험업법은 2020년 12월 8일 공포되어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하에서는 개정 보험업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음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 완화(제9조 제2항)

-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함
  - 다만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5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액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고(예: 생명보험 200억 원, 화재보험 100억 원, 자동차보험 200억 원, 질병보험 100억 원 등[1]),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의 경우[2]에는 위 자본금 요건의 2/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면 됨
-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였음
  - 즉,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자본

1) 둘 이상의 보험종목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각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금으로 하며, 다만 그 합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00억 원으로 함
2) 총 보험계약 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회사를 말함

금으로 납입하면 됨

-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임[3]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부담 완화(제11조 및 제11조의2)

- 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할 수 있도록 한 업무,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 ③ 그 밖에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금융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를 겸영할 수 있음
  - 현행 보험업법상으로는 위와 같은 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금융위원회[4]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①과 ③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②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폐지함
- 보험회사는 부수업무를 하려면 사전에 금융위원회[5]에 신고해야 하는데,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하여 공고된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폐지함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간소화(제115조)

- 현행 보험업법상으로는 보험회사가 자회사[6]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또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사전 신고가 필요함[7]
- 개정 보험업법에 의하면 자회사 주식의 소유에 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주식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요건으로 설립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자회사 소유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
- 또한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후 보고 대상으로 완화함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 의무화(제120조의2)

---

3) 한편 보험업법상 보험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는 않음(개정 보험업법 제4조 제2항 단서)
4) 다만 겸영업무 신고 접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음
5) 다만 부수업무 신고 접수 및 심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음
6)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를 말함
7) 다만 자회사 소유에 관한 승인 여부의 심사 및 자회사 소유에 관한 신고의 접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음

-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종목의 특성, 총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회사는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함
  - 외부 검증이 의무화되는 보험회사의 범위, 검증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임

보험상품 자율화 원칙 명확화(제127조)

-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해서만 사전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현행 보험업법에 의하면 ①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거나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②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경우, ③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하나, 개정 보험업법에 의하면 이 중 ②의 경우에는 사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8]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근거 보완(제134조)

- 현행 보험업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소속 임직원 포함)가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9] 제재를 할 수 있음
-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제재 근거에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추가함

보험계약 이전 관련 조항 정비(제141조 및 제142조)

- 현행 보험업법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경우 계약 이전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공고에 더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함
  - 보험계약 이전에 대한 이의 제기[10] 등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
- 또한 현행 보험업법에 의하면 보험계약 이전 결의 후 보험계약을 이전하거나 이전하지 않게 될 때까지 이전하려는 보험계약과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개정 보험업법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부실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계약 체결 금지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

8) 제127조 개정 조항은 공포일인 2020. 12. 8부터 시행됨
9) 그 밖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음
10) 보험업법상 보험계약 이전에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10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이전이 불가능함

공제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 요구 근거 마련(제193조)

- 현행 보험업법에 의하면 공제업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음
-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이에 더하여, 공제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함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제209조)

- 현행 보험업법은 실손의료보험 등에 대한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조항[11]은 있으나 위반 시 제재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함
  - 보험회사가 위반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위반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모집종사자가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함 KiRi

11)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실손의료보험 등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함